



3255 Wilshire Blvd., Suite 902  
 Los Angeles, CA 90010  
 (213) 389-2077  
 For California Relay Service TTY: (800) 735-2929  
 www.mhas-la.org



공정 주거 (FAIR HOUSING):  
 바로 그 법!

*A nonprofit organization protecting and advancing the legal rights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 이 달의 공정 주거(Fair Housing) 팁

### 팁 #3 – 정서적인 지원 동물(Emotional Support Animal ) 및 "애완 동물 보증금 (Pet Deposits)"

**임대인:** "저는 애완 동물 사육을 허용하지 않아요. 애완 동물을 기르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에 더 많은 청소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한 세입자가 그의 장애 때문에 정서적인 지원 동물을 기르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물론 정서적인 지원 동물이 일반 애완 동물과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만, 청소에 관한 한 마찬가지로의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정서적인 지원 동물 때문에 추가적인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률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애완 동물 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 정서적인 지원 동물을 기르도록 허가하는 것은 정당한 편의 제공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정서적인 지원 동물을 기르도록 허가 하기 위해 요금 또는 보증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사실, 임대인이 다른 거주자들에게 애완 동물 보증금 또는 요금을 징수하는 상태이더라도, 정서적인 지원 동물이 필요한 세입자에게 그러한 보증금 또는 요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입자가 정서적인 지원 동물을 기르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입니다.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에 대한 거부는 주거에 대한 차별 행위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마모에 의한 손상 수준을 넘어서는 피해에 대해 세입자에게 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임대인들은 정서적인 지원 동물을 기르는 세입자들에게, 세입자의 동물이 야기한, 통상적인 마모에 의한 손상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피해에 대해서도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해야 할 조치:** 귀하께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추가적인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세입자들에게서 통상적인 마모에 의한 손상 수준을 넘어서는 피해에 대해 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임대인이라면, 세입자 또는 세입자의 동물이 야기한, 통상적인 마모에 의한 손상 수준을 넘어서는 피해에 대해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보기에 장애 관련 필요인지 명백하지 않거나 불분명할 때, 세입자의 장애와 관련해서 동물이 필요한 지 증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세입자의 특정 진단명이나 의료기록을 보게 해 달라고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또한,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귀하께서는 지역 공정 주거 기관,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거부(DFEH), 또는 미국 연방 주거 및 도시 개발부(HUD)에 불만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HUD에 불만을 접수하시려면, 800-669-9777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hud.gov/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complaint-process](http://www.hud.gov/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complaint-process)

DFEH에 불만을 접수하시려면, 800-884-1684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dfeh.ca.gov/complaint-process/file-a-complaint/](http://www.dfeh.ca.gov/complaint-process/file-a-complaint/)

공정 주거법은 다음 특성을 근거로 한 거주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종, 종교, 출신 국가, 피부색, 성별, 혼인 여부\*, 혈통\*, 가족 상황, 장애, 성적 지향\*, 소득원\*.

\* 표시는 연방법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캘리포니아에서 차별이 금지된 항목을 나타냅니다.

**고지사항:** 공정주거법 이달의 팁 프로그램은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법적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MHAS, 지역 공정주거의회 또는 기타 개인적으로 선택한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공정 주거 이달의 팁은 HUD 의 주거 및 도시개발 공정 주거 프로그램(Fair Housing Initiatives Program)의 보조 기금(보조 기금 #FEOI180041-01-00)으로 제공됩니다.